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 29 호 2015. 3.13(금)

공 고

-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1
-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7

회 람																				
--------	--	--	--	--	--	--	--	--	--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 공고 제2015 - 340호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관을 해치고 우범화 우려가 있는 도시지역의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지역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 나.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대상(안 제6조)

3. 조례 제정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4월 2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 건축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8)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건축과(☎063-620-6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 3.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축 과 장

1. 제정이유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관을 해치고 우범화 우려가 있는 도시지역의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지역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 나.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대상(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기 간 : 2015. 3. 13. ~ 2015. 4. 2.(20일간)
 - 결 과 :
- 나.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 지역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빈집”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3.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2년마다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도시지역의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
- 2.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5 - 7호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남원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설치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하여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목적, 위치,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다. 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라.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사무관리 및 그 밖의 사항(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

3. 조례 제정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4월 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고:농촌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의견 제출할 곳 : 우)590-823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8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이하 “가공교육센터”라 한다)
2. 위치 :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가공교육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교육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전부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교육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전부를 말한다.

제4조(기능) ① 농업인 등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교육센터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시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대
여
 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출연 연구 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
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7.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교육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가공교육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확인 및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한다.

- 1. 농업인 등이 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여기서 제품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투여되는 원료를 말하고 부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미만으로 투여되는 원료를 말한다.
- 2. 제4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 ②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 소비를 위한 시설사용
-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 절차 없이 가공교육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 4. 주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가공교육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6. 가공교육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 7. 관계법령·규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① 가동시설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산정된 사용료는 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역 농산물의 가공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지역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사용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

3. 가공교육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의 취소·사용중지 등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시설의 무상대여) 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유통·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 등이 2년 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제품의 반출 제한) ① 시장은 가공교육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 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 미납
4. 가공교육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
5.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① 사용자는 가공교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시설과 장비는 가공교육센터의 운영 목적 및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손상·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실제 비용을 변상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가공교육센터 운영과 관련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교육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사용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인	업체명		연락처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신청 사항	사용자명	외 명		
	사용장비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제품명(품목)	주원료명(kg)	가공유형	비 고 (판매용, 시험연구용)

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 한다 .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별표]

사용료 산정기준 (제9조제1항 관련)

□ 구입 가격의 0.3 ~ 1.0% : 1일 사용료

□ 일일사용료 계산식

감각상각비 + 자본이자 + 수리비 / 예상사용일수

□ 일일사용료 산정 기준

감각상각비 = (구입가격 - 폐기가격) / 내용 연수

구입 가격 : 실제구입가격

내용 연수

폐기 가격 : 구입가격의 10%

금리 : 4.5%

수리비 : 6%

□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 가이드(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2006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2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연락처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